

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8-3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의견에 따라,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관하여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하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전문재판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
- 그 밖에 예규의 체계·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를 두도록 함(안 5. 가.항 단서 신설)
-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(안 5. 라.항 단서 신설, 안 7. 나.항)
- 그 밖에 예규의 체계·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

3.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8-3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8-3)

일부개정예규안

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8-3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. 가.항 중 “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” 를 “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5. 나.항 중 “{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제3조 참조}” 를 “[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제3조 참조]” 로 한다.

5. 라.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5. 마.항 중 “ 「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(1991. 7. 10. 행정

예규 제170호)” 를 “ 「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(2009. 2. 25. 행정예규 제801호)” 로 한다.

7. 나.항 중 “2년간” 은 “2년간(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경우는 해당 기간)” 으로 한다.

8. 가.항 중 “(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제20조 참조)” 는 “[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제18조 참조]” 로 한다.

8. 다.항 중 “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의3 제2항 및 제14조 제11호” ” 는 “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제14조 제11호” 로 한다.

9. 중 “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제9의 2” 는 “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제12조” 로 한다.

10. 중 “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” 는 “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나. (생략)

다.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문재판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의3 제2항 및 제14조 제11호”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라. (생략)

9. 사건배당 전의 재정합의

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해 법원에 접수된 단독사건 중 전문재판부에 소속된 판사 이외의 단독판사에게 배당할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이를 전문재판부(합의부)에 배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(재일 81-4)” 제9의2의 규정에 의한다.

10. 가중치의 부여

전문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통상사건과 비교한 가중치(감경치를 포함한다)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치는 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” 제4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-----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제14조 제11호-----
-----.

라. (현행과 같음)

9. 사건배당 전의 재정합의

-----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(재일 2003-4)」 제12조-----
-----.

10. 가중치의 부여

-----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 -

조에 의하여 재판부의 종류와 수
및 명칭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
여야 한다.

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| |
| 연락처 | (02) 3480-1245 |